

# 인삼약초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김길중 · 고려인삼포럼 상임이사

## 1. 인삼 관련제도(법)의 실태

### 가.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산업관리

<인삼산업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 제조,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산업법>에서 정의하는 인삼류의 개념에는 인삼을 원료로 하는 인삼제품이나 산양삼(=장뇌삼)과 산삼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수요가 늘어나는 인삼제품이나 청정인삼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삼산업의 골격을 왜곡하거나 인삼경작자와 제조업체들에게 불편과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삼산업법>의 주요내용은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허가와 검사, 표시내용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경우 <인삼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법 제1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삼류의 판매 및 수출입업은 신고나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효율적인 인삼의 품질관리와 차별적 유통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인삼의 제조 및 유통관련 법령 즉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유사제품의 제조 및 유통규제와 형평성결여라는 문제점이 있다.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해 연근

관리와 검사,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즉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 포장 등에 해당 연근을 표시(법 제15조 1항)>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연근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과거 전매시절의 6년 근 홍삼 위주(소비자선호)의 불합리한 소비“패턴”이 바뀌질 않고 있다.

인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인삼에 대한 검사는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한 자,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한편, 인삼제조업체의 편의를 위해 자체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체검사의 경우 66m<sup>2</sup>이상 전용 검사장과 필요한 검사기구를 갖추고 제조관리부서와 검사관리부서 두되, 일정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1)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삼류의 용기, 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

## 기획특집 2

질관리법에 의해 지리적표시의 등록(법 제22조)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상품의 명칭을 등록,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국내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WTO나 UN산하기관인 국제지적재산권재단(WIPO) 등에 등록하여야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삼은 원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고려인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Codex의 인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음).

###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인삼산업 관리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대상품목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기 때문에 인삼도 식품으로 생산, 유통되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신고방법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은 식약청장의 허가를,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식약청장에게

신고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냉동냉장업, 용기포장재제조업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인삼차 등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업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삼이나 백삼은 물론 80% 이상의 인삼을 함유한 인삼류를 생산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한 <인삼산업법>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인삼산업법과 다른 점이다.

한편 식품에 포함된 인삼제품류의 경우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공전에 의해 규격과 기준, 식품유형, 시험방법, 표시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사항이 <인삼산업법>상의 것과 중복 부분이 많아 어느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인삼의 품질과 위생관리에 영향을 미침) 문제가 많은 부조리를 낳고 있다.

### 다.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삼산업관리

2002년 8월26일 공포된 법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는데, 이 법 역시 인삼제품류, 홍삼제품류를 비롯한 건강기능성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삼 및 홍삼제품류에는 당침인삼, 홍삼분말류, 인삼분말류, 홍삼“캡슐”류 등이 포함된다.

건강기능성식품제조업자는 ① 식약청장에게 생산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며 ② 품질관리인(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건강기능성식품제조업종사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5년 이상 관련제조업 종사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③ 월1회 이상 잔류농약 및 기준, 규격항목에 대한 의무적인 자가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④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기능성식품의 용기와 포장에는 ① 건강기능성식품이란 표시 ②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의무비율 ③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④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⑥ 그밖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

라. <약사법>에 의한 인삼산업 관리

전통적으로 인삼은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식품에 해당하는 인삼제품이 등장하면서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인삼정, 인삼분말 등의 제품은 의약품 취급)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인삼차나 인삼“드링크” 등)으로 보건사회부가 관리해오다 1973년부터 <홍삼전매법>과 <인삼제품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매청이 이를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인삼이 의약품 또는 한약재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한약재제조업의 경우 <약사법> 및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 의해 전용작업실 100m<sup>2</sup> 이상, 제조관리사(약사 또는 한약사)고용, 30종의 시설 및 85종의 기구를 갖추어 지방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인삼산업관련제도(법)의 문제점

인삼산업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먼저 <인삼>이란 하나의 품목을 대상으로 <인삼산업법>은 물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무려 다섯 종류의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그리고 일반 식품과 농산물 등 인삼이 가진 다양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법령별로 규제방법이 각기 상이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통합적 관리는 고사하고 중복규제에 의한 관련업체의 부담과 규제수준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인삼관련 제조업 허가 시 일본이나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홍삼과 백삼, 그리고 인삼이나 홍삼성분이 80% 이상 함유된 제품 등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삼차나 드링크와 같이 인삼성분에 10% 미만 함유된 인삼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 신고를 하고, 인삼성분이 10% 이상 함유된 인삼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약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동일사안에 대해 관리방법과 규제수준을 달리 하고 있다.

인삼제품의 수출입 및 판매업의 경우 인삼산업법상 인삼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삼제품의 경우 시, 도지사에게 신고(건강기능성식품의 수입은 식약청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대상 품목과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삼 및 인삼제품은 단순한 농산물, 식품(예 삼계탕)에서부터 기능성제조식품과 의약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방법이 크게 달라짐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각종 인삼제품보다 함량이 높거나 홍삼, 백삼 등 원형삼 형태로 되어 있는 인삼류에 대해서는 정작 규정과 기준이 없이 관리하고 있어서 품질관리의 형평성과 소비자 정보부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삼의 효능이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삼제품에 대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함량을 기준으로 영양가치를 표시한 결과 대부분이 영양“제로”로 나타나 결국 영양가치가 없는 상품이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행표시제도의 “아이러니”이다.

최근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10% 이상 인삼성분을 함유한 인삼제품에 대해서는 효능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홍삼이나 백삼, 태극삼 등 원형삼은 물론 80% 이상 인삼성분을 함유한 인삼류에 대해서는 효능을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기능성식품표시기준>에 의해 표시를 허용한 인삼제품효능을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또는 자양강장>의 세 가지에 한정함으로써 <인삼칠효설>이나 <대한

약전해설서)에 제시된 내용 등 일반적인 인삼의 효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인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운용되는 검사제도의 경우도 부처별로 나누어 검사기준과 방법, 검사기관이 각각 다르다.

인삼류의 경우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와 자체검사업체가 병존,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가 국가지정검사소이고 5개의 지정검사업체가 있고 추가적으로 3개의 지정검사업체가 신청하였다.

그러나 자체검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일부 자체검사업체들의 등급과 연근수의 불투명성이 문제이며 심지어 외국삼까지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삼검사법에 미검사품은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실상은 검사품과 미검사품의 비율이 4대6정도로 미검사품이 훨씬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인삼산업은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섯 종류의 법령 규제를 받고 있어 인삼재배농가부터 제조업자, 수출입업자에 이르기까지 갈피를 잡기 힘든 현실이다.

또한 인삼산업제도(법)의 문제는 생산, 가공, 유통이 전후방으로 연계된 하나의 통합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농산물과 식품, 의약품 등으로 편의상 분류하고 있으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에서 단편적 내지는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국내외 인삼소비추세가 제품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인삼산업법>에서는 원형삼위주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 3. 인삼산업관련제도의 개선방안

가. 인삼류의 정의에 인삼제품과 산양삼(장뇌삼)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삼산업법>상 인삼류의 정의에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인삼류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 홍삼분말류, 당침인삼, 기타 가용성 인삼성분이 80% 이상인 인삼 및 홍삼제품>을 대통령이 정하는 인삼제품으로 인정하여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인삼류의 정의에 산양삼 또는 장뇌삼과 산삼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인삼경작과정에서 사용하는 비료나 농약이 문제가 되자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는 야산에 인삼을 재배하여 청정인삼으로 차별적인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 WTO/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진전되면 이들 인삼이 세계시장, 아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고급명품으로 유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산양삼(장뇌삼)이 세계인삼시장에 공급되면서 고려인삼의 고품질 이미지도 퇴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서는 산지에서 임간재배한 산양삼을 국제인삼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그 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청정인삼재배에 박차를 가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산양삼 산업화는 전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 국제인삼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삼은 고려인삼이 아니라 중국산이나 미국, “캐나다”산의 산양삼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시중에도 유통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볼 우려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70%를 점하고 있어서 산양삼재배, 제도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자연조건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밭에서 깨끗한 산지>로

재배지를 옮겨 고급청정인삼을 생산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때이다. 인삼을 신비한 상품이 아니라 과학적인 일반상품으로 세속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나.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생산이력제,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철저.**

WTO/DDA체제하에서 우리 인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급인삼으로 계속 차별화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생산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관리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인삼의 차별적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경작신고제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 자율신고제도하에서도 사실상 농림부나 조합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연근 확인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작자가 면적과 식재년도 등 경작신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은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연근확인을 포함한 품질인증이나 생산이력제의 확립을 해나가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현행 검사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즉 인삼검사소에 전문인력과 장비,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자체검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검사강화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제도는 과감히 전면폐지하고 짐품확인“시스템”, 생산자실명제, 생산이력제, 제조물책임법 등으로 품질보장 내지는 향상을 꾀해야 한다.

**다. 인삼가공 및 유통관련규제의 정비**

현재 다섯 종류의 법령규제를 받고 있는 인삼산업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모두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언제나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인삼 및 인삼제품에 필요한 시설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유사한 제품에 대한 인허가 기관이 다른 것을 조정, 통합해야 한다.

**라.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각종 표시내용의 정비**

〈인삼산업법〉에서 인삼류로 정의하고 있는 홍삼과 태극삼 및 백삼은 원칙적으로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생관리와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표시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삼의 가치를 판별하는 척도인 연근이나 생산

지역, 원산지는 물론 인삼 또는 인삼성분을 나타내는 명칭, 도안, 유래 등에 대해서도 표시기준과 방법을 규제하고 제품에 사용한 원료삼의 종류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인삼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삼류의 경우, 가용인삼성분량이란 관점에서 건강기능성식품에 속하는 인삼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인삼류에 대해서도 인삼효능과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인삼산업관련 행정체계의 정비**

하나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수출입, 소비 등 전후방으로 연계된 전체 “시스템” 속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인삼산업법〉을 비롯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한약재수급조정 및 유통관리규정〉등에 흩어져 있는 인삼 및 인삼제품과 관련된 조항을 〈인삼산업법〉체제로 통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령별로 규제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과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조정, 정비해야 한다.

수출 면에서 국가전략산업이란

차원에서 인삼품질을 관리하고 산업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인삼행정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농림부 외에도 재무부(KT&G자회사로서의 인삼공사), 보건복지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성식품 및 인삼제품), 농진청(연구 및 기술지도), 심지어 산림청(산양삼)까지 수많은 중앙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인삼의 수요창출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수출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인삼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삼제품에 대해서는 기초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인삼수출증대를 위해 홍삼을 비롯한 모든 인삼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리업무를 전매청으로 일원화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기틀을 닦은 전례에 비추어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이후 흐트러진 인삼산업의 관리체계를 농림부를 중심으로 다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원화가 되어야 인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품질, 고급인삼을 생산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중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삼산업의 중흥, 수출경쟁력비교우위확보는 바로 인삼관련제도의 개선과 추진주무부서 즉 행정체

계의 정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내적인 충실(국내“시스템”, 환경의 정비)없이 외연(수출)은 있을 수가 없다.

#### 4. 농림부주관하의 인삼연구소 신설.

담배인삼공사(KT&G)의 <인삼연초연구원>이 없어지고 난 후, 인삼에 대한 연구가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인삼중주국이란 자부심에 걸맞는 세계적인 인삼연구소를 신설해야 한다.

특히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홍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끊임 없는 인삼연구가 지속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맥이 끊어진 우리 현실이다.

겨우 <인삼학회>가 인삼공사의 지원금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인삼연구소를 본격적으로 신설하여 우선 초미의 급선무인 다음 몇 가지 분야에서만이라도 성과를 올려서 인삼“마케팅”과 즉시 연계시켜야 한다(연구소에 인삼“마케팅-팀”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4년 근과 6년 근의 객관적인 연구

6년 근 홍삼포의 경우 중도폐지

율(결주율)이 43%에 달할 정도로 생육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6년 근 만을 고집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으로 인삼 연근에 따른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경제적 분석(효능 및 성분 분석 포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외국은 3-4년 근 위주로 수확하고 있다.

최근 국내학자의 연구결과(고성권 2004년)에 의하면 4년 근이 6년 근에 비해 “사포닌”함량이 더 많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다.

이런 연구가 더욱 더 진전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

#### - 홍삼과 백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원래 홍삼제조 목적은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배 연수(6년 근)와 가공상의 차이만 있을 뿐 효능 면에서는 5년 근 미만의 것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백삼과 홍삼의 차이는 홍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미량의 홍삼특이 성분이 생기는데, 백삼은 사포닌 수가 22가지이고 홍삼은 30가지이다. 그러나 8가지 더 많은 성분이 특이한 약효성분을 갖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삼은 우수한 제품이고 백삼은 저급품으로 국내외에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다년간의 홍삼전매시절의 <정

관장) “브랜드”의 후광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전매독점시절의 홍삼 위주의 광고 등).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홍보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여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국내백삼시장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백삼수출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의 전매제도(100여 년)의 불투명성, 후유증에서 아직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설에 대한 연구**

최근 국내연구결과(한상원 2003년)에 의하면 고려인삼은 승열작용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고려인삼의 올바른 한방적해석으로 서양삼 유통업자들이 홍보전략으로 사용하는 고려인삼의 승열작용과 서양삼의 청열작용에 대한 반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고려인삼만이 갖고 있는 효능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연구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와 홍보는 많은 자금이 소요됨으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본초학적인 한방해석을 연구하여 고려인삼과 서양삼과의 차이점,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 대대적인 국가차원의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 비“사포닌”성분에 대한 고려인삼과 서양삼에 대한 비교연구.**

인삼성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포닌”중심의 약리효능연구에서 이루어져 왔음으로 인삼의 비“사포닌”성분의 약리효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앞으로 비“사포닌”의 약리효능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한 고려인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면역증강활성이 있는 산성다당체, 항암작용을 나타내는 “폴리아세치렌” 등도 화기삼에 비해 고려인삼이 보다 많은 함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홍삼에 대한 연구 집중으로 외국삼과의 효능차별화에 대한 비교연구가 제대로 되지 못해 “마케팅”전략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 외국의 특허개발 동향에 대한 항시 조사연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된 외국의 인삼제품에 대한 특허내용을 보면, 위장기능 개선, 항암, 당뇨치료 등을 표방한 기능성식품류의 특허가 점차 증가, 피부미용 등의 화장품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특정성분 즉 “진세노사이드”의 성분변화에 의한 특정기능성 발현 목표의 제품개발특허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외국삼(서양삼)에 대한 연구**

고려인삼과 서양삼을 직접 비교하는 연구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려인삼은 “다이올-그룹”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과 “트리올”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의 비율이 1.3대1로 양 “그룹”이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으나, 서양삼은 8대1의 비율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고려인삼은 항 피로감과 “스태미너”를 증진하는 작용을 갖고 있어 보원기제로서 오래 동안 전래된 한방적 해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삼은 중추신경억제 작용, 청열작용하는 보음제로서 한방약리학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항피로작용과 “스태미너”증진작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서양삼과 고려인삼은 약리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서양삼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노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산업면에서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 다시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국가이다.

그런데 농업부문에서만은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삼은 “웰빙” 시대에 잘 어울리는 작물이다. 절호의 한류열풍을 인삼 “마케팅”과 재빨리 접목시키는 인삼성분연구가 무엇보다 급선

## 기획특집 2

무이다.

“스위스”는 “커피” 한 톨 생산하지 못하는 자연조건의 나라이나 “네슬레” 회사(주)는 세계적인 “커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인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파마톤”(주)회사는 60년대에 인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2002년도 매상고는 우리나라 인삼 총 수출액 5천6백 만 불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인삼연구소가 설립되어 인삼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농업분야에서의 근시안적인 애국심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을 더 망치고 농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 Summary

1. There are five laws regulating the Korea Ginseng industries, viz. <Ginseng industry law>, <Food sanitation law>, <Drug handling law>etc, which make Ginseng farmers, commodity makers, dealers, exporters confusing and costing-up etc, Ginseng consumers also.

2. The above five complicated laws sometimes are becoming a kind of bottle-neck in exporting Korean-ginseng, especially towards the western countries which do not know exactly about Ginseng's effect and real value for the health of human-being.

By the <Food sanitation law>, exporters could put label only mentioning protein, grease, saccharide, vitamin etc, deleting Ginseng-saponins etc, accordingly which makes Ginseng is only a kind of food, not containing any medicinal value.

3. In order to develop a certain industry, not only production but also processing, distribution-industry, import-export business, consumption must be engaged each other as one-system(so called forward-backward effect).

But the above five laws relating to Ginseng-industries in Korea are acting negatively in the aspect development of industry, because those five laws sometimes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for the Ginseng industry.

4. Therefore as far as Ginseng industries are concerned, the above five laws must be concentrated to the only one law namely <Ginseng industry law> to improve the regulating circumstances more favorably for the Korean Ginseng-industries.

And <Ginseng research institute> should be established in near future, driving by the Government-base to pursue the various Korean Ginseng's valuable genetic-essence and medicinal value viz. about ginsenoside, white-ginseng, red-ginseng and so called fever-up phenomena etc.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uld be linked with the marketing area of the Korean-ginseng, in domestic and abroad both, simultaneously.

The above is summarized by Kil-joong, Kim.

on behalf of Korea Ginseng Forum.